

## □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[2008. 2/4분기부터 적용]

1. 배정방법 :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정보 및 거주정보를 기초한 점수를 반영하여 배정
2. 배정심의대상 :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자  
 ※ 수시배정 : 정기 배정자 이용포기 시 수시로 추가배정(대기 순서에 따라 배정)
3. 배정우선순위 선정(우선순위 중 배정표 점수에 따라 배정)
  - 제1순위 : 배정(신청)일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상이자,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은 1~4급)을 대상으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장애등급 높은 순 ② 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)
  - 제2순위 :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 중에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 (동점 시 ①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② 자동차 배기량이 낮은 순)
  - 제3순위 : 1·2순위를 우선 배정 후 잔여구획을 비거주자(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근무자)의 상위점수(해당차량 합계 점수)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자동차 배기량 낮은 순 ②관내 사업개시연월이 빠른 순)

<표 1>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

선정항목		점수	비고
관내 전입일 (거주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주연수 = 거주기간 × 1.0</li> <li>- 거주월수 = 거주월수 × 0.09</li> <li>※ 최대 적용 값 : 20점미만 적용</li> </ul>	20	주민등록 등본 참조 (마포구 전입기간)
차종별 (공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경차</li> <li>② 소형차량(1000cc 이상 ~ 1500cc 미만)</li> </ul>	5 2	자동차등록증 참조
특별가산점 (가점)	국가 유공자 상이자 및 장애인(1~3급), 고엽제 휴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 단, 시각장애인(1~4급)	10	입증 서류 첨부 시
	기타 장애인(4급 ~ 6급) 차량	5	
우대가점	승용차 요일제 참여자(전자태그 부착)	10	입증 서류 첨부 시
	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(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)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65세 이상 고령자 차량	5	입증서류 첨부 시
	1가구(또는 사업장) 다차량 중 4번째 차량	-30	
	1가구(또는 사업장) 3차량 중 3번째 차량	-20	
기사용(수혜)자	1가구(또는 사업장) 2차량 중 2번째 차량	-10	
탈락횟수	배정 1회마다(누적 적용 횟수 4회)	-3	예) 1회 배정 시 -3점 2회 연속 배정 시 -6점
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장 근무자	매회 탈락 시(누적 적용 횟수 4회)	3	예) 1회 탈락 시 3점 2회 연속 탈락 시 6점 기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내 사업개시 연수 = 기간 × 1.0</li> <li>- 관내 사업개시 월수 = 월수 × 0.09</li> </ul>	20	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(3순위) 별도 적용

### 비고

1.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
2.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가점부여
3. 위 기준 외에 “심의위원회(마포구시설관리공단)”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## 마포구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우선순위 신·구 비교표

현 행	변 경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■ 지정(배정)기준 - 배정우선순위</p> <p>1순위 : 2순위 중 장애우(국가유공자 중 '상이자' 와 고엽제 후유증환자 포함) 차량을 우선 배정(경쟁 시 ① 장애등급 높은 순, ② 장기거주자 순)</p> <p>2순위 : 신청동 거주지와 차량 주소지가 동일한자로서 장기거주자 순(신청지역 동 전입일 빠른 순)으로 1, 2지망별 배정</p> <p>3순위 : 2순위 배정 후 여유구획을 관내 거주자의 사업장 차량·1세대 1차량·초과차량·영업용차량 등에 추첨 순 배정 (이후 연장은 2순위 동일 적용)</p> <p>4순위 : 3순위 배정 후 여유구획을 관내 '사업장 종사자' 등 비거주자(차량)에게 '주간' (여유 시 전일)에 한하여 지망구간별로 추첨 순 배정</p>	<p>■ 배정우선순위 선정(우선순위 중 배정표 점수에 따라 배정)</p> <p>-제1순위 : 배정(또는 신청)일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및 장애등급 1~3급, 시각장애인은 1~4급을 대상으로 상위점수(해당차량 합계점수)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장애등급 높은 순, ② 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)</p> <p>-제2순위 : 배정일 현재 지역 내 거주자 중에서 상위 점수(해당차량 합계 점수)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)</p> <p>-제3순위 : 1·2순위를 우선 배정 후 잔여구획을 관내(마포구)사업자 및 사업장 근무자 중 상위점수(해당차량 합계점수)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자동차 배기량 낮은 순②관내사업개시연월이 빠른 순)</p> <p>&lt;표 1&gt;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(안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선정 항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점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관내 전입일 (거주자)</td> <td> <math display="block">\begin{aligned} \text{- 거주연수} &amp;= \text{거주기간} \times 1.0 \\ \text{- 거주월수} &amp;= \text{거주월수} \times 0.09 \\ \text{* 최대 적용} &amp;\geq 20점\text{미만 적용} \end{aligned}</math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민등록 등본 참조 (마포구 전입기간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차종별 (공통)</td> <td>           ① 경차            ② 소형차량(1000cc 이상 ~ 1500cc 미만)        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 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동차등록증 참조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특별가산점 (가점)</td> <td>           국가 유공자·상이자 및 장애인(1~3급),          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            단, 시각장애인(1~4급)        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증 서류 첨부 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기타 장애인(4급 ~ 6급) 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우대가점</td> <td>         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(전자태그 부착)            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            자금해 지원차로 등록된 차량(지원해 지원차 표지 부착            차량)        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 5 5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입증 서류 첨부 시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65세 이상 고령자 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가구(또는 사업장) 다차량중 4번째 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3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가구(또는 사업장) 3차량중 3번째 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2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1가구(또는 사업장) 2차량중 2번째 차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1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기사용(수혜)자</td> <td>배정 1회마다(누적 적용 횟수 4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예 1회배정 시 ~점 2회연속 배정 시 6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탈락횟수</td> <td>매회 탈락 시(누적 적용 횟수 4회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예 1회탈락 시 3점 2회연속 탈락 시 6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장 근무자</td> <td> <math display="block">\begin{aligned} \text{- 관내 사업개시 연수} &amp;= \text{기간} \times 1.0 \\ \text{- 관내 사업개시 월수} &amp;= \text{월수} \times 0.09 \end{aligned}</math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(3순위) 별도 적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선정 항목		점수	비고	관내 전입일 (거주자)	$\begin{aligned} \text{- 거주연수} &= \text{거주기간} \times 1.0 \\ \text{- 거주월수} &= \text{거주월수} \times 0.09 \\ \text{* 최대 적용} &\geq 20점\text{미만 적용} \end{aligned}$	20	주민등록 등본 참조 (마포구 전입기간)	차종별 (공통)	① 경차 ② 소형차량(1000cc 이상 ~ 1500cc 미만)	5 2	자동차등록증 참조	특별가산점 (가점)	국가 유공자·상이자 및 장애인(1~3급),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 단, 시각장애인(1~4급)	10	입증 서류 첨부 시		기타 장애인(4급 ~ 6급) 차량	5		우대가점	승용차 요일제 참여자(전자태그 부착) 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 자금해 지원차로 등록된 차량(지원해 지원차 표지 부착 차량)	10 5 5	입증 서류 첨부 시		65세 이상 고령자 차량	5			1가구(또는 사업장) 다차량중 4번째 차량	-30			1가구(또는 사업장) 3차량중 3번째 차량	-20			1가구(또는 사업장) 2차량중 2번째 차량	-10		기사용(수혜)자	배정 1회마다(누적 적용 횟수 4회)	-3	예 1회배정 시 ~점 2회연속 배정 시 6점	탈락횟수	매회 탈락 시(누적 적용 횟수 4회)	3	예 1회탈락 시 3점 2회연속 탈락 시 6점	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장 근무자	$\begin{aligned} \text{- 관내 사업개시 연수} &= \text{기간} \times 1.0 \\ \text{- 관내 사업개시 월수} &= \text{월수} \times 0.09 \end{aligned}$	20	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(3순위) 별도 적용
선정 항목		점수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내 전입일 (거주자)	$\begin{aligned} \text{- 거주연수} &= \text{거주기간} \times 1.0 \\ \text{- 거주월수} &= \text{거주월수} \times 0.09 \\ \text{* 최대 적용} &\geq 20점\text{미만 적용} \end{aligned}$	20	주민등록 등본 참조 (마포구 전입기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차종별 (공통)	① 경차 ② 소형차량(1000cc 이상 ~ 1500cc 미만)	5 2	자동차등록증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특별가산점 (가점)	국가 유공자·상이자 및 장애인(1~3급),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 단, 시각장애인(1~4급)	10	입증 서류 첨부 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기타 장애인(4급 ~ 6급) 차량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우대가점	승용차 요일제 참여자(전자태그 부착) 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 자금해 지원차로 등록된 차량(지원해 지원차 표지 부착 차량)	10 5 5	입증 서류 첨부 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65세 이상 고령자 차량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가구(또는 사업장) 다차량중 4번째 차량	-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가구(또는 사업장) 3차량중 3번째 차량	-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1가구(또는 사업장) 2차량중 2번째 차량	-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사용(수혜)자	배정 1회마다(누적 적용 횟수 4회)	-3	예 1회배정 시 ~점 2회연속 배정 시 6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탈락횟수	매회 탈락 시(누적 적용 횟수 4회)	3	예 1회탈락 시 3점 2회연속 탈락 시 6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장 근무자	$\begin{aligned} \text{- 관내 사업개시 연수} &= \text{기간} \times 1.0 \\ \text{- 관내 사업개시 월수} &= \text{월수} \times 0.09 \end{aligned}$	20	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(3순위) 별도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## 4. 신청자격

- 신청일 현재 ①관내 거주자 ② 관내에 사업장(근무처)이 있어 주간(또는 전일)에 빈 주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.
  - \* 우선배정제외대상 : ①관련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(영업용 차량(렌터카 포함), 2.5톤 이상 화물차, 16인승 이상 승합차, 특수차량 등) ②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③동일 차량을 2개 구간(전용구획 포함) 이상에 중복배정하지 않음(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전후를 불문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배정취소 등 임의 처리)
  - \*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
  - \* 우선배정제외대상이라도 주차여유구획 발생시 ①③의 경우 배정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(민원 발생 시 배정취소)

#### 5. 배정(지정) 원칙

- 신청 시 반드시 차량소유주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(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출, 확인사)
- 전용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소유자가 일반구획(간)에 이용신청하는 경우 상근자로 간주
-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
- 주차 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주차구간(구획) 지정기간은 3개월(분기) 단위이며 주차요금도 지정기간 요금을 선납 하여야 함.
- 주차요금을 납기 내 미납한 경우에는 지정취소하고 취소 분은 후 순위자(또는 대기자)에 배정함.
- 개인운송사업자 차량(개인택시, 2.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)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
- 공사 등으로 인해 구획선이 삭선되거나 기타 이용불가 사유 발생시에는 대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해당구간 지정일이 늦은자 ②지정순위가 늦은 자 순을 지정(배정) 중지 또는 취소함.
  - \*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삭선 되는 경우 수시분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
-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차량변경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중도 이용 중지시에는 주차권 반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환불처리함.

#### 6. 배정(지정) 취소(제한)

- 주차구획 배정 후 15일(전용주차구획은 30일)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
- 배정(지정) 원칙,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거주자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불여 전대한 경우
- 신청서 허위(착오)기재,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전후를 불문하고 배정(지정) 취소 함.

## 7. 배정자 사용조건

- 배정 받은 후 이용자가 직접 배정기간에 배정 확인
- 주차권 미부착시 단속(견인) 대상이 됨.
-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유지
-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차량 훼손 및 도난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님(주차구획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)
-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, 지정주차기간,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  
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 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(견인) 대상이 됩니다.
- 기타 이 유의사항(배정·사용 조건 등)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.